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대표이사 ���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퇴직금청구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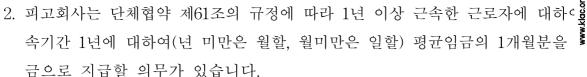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○. ○○. 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피고회사는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의 제조,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이고,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〇〇. 〇〇. 이. 피고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.



- www.klac.or.krif.
- 3. 그러나 피고회사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○○○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(갑 제2호증 체불금품확인원 참조)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퇴직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단체협약서

1. 갑 제2호증 체불금품확인원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				or.kr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 기 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	www.klac.or.kr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불복절차 및 기 간	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항) 	2주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퇴 직 금 의 법 정 기 준 및산정방법	(X년+Y개월/12월+Z일/365일)×30일×1일 평균임금			
기 타	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「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」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,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, 근로기준법 제36조(현행 제37조)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,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, 이를 가리켜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, 따라서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(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2001다24051관결). · 괴고회사가 상인이라면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따른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은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음(대법원 1977. 4. 12. 선고76다497 판결, 1976. 6. 22. 선고 76다28 판결). ·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(현행동법제37조) 부분이 신설되어, 2005.7.1. 이후 퇴직 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'근로관계가 종료된'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(15일째)부터 지급일까지 연20%의 지연이자를청구할 수 있게 됨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. 			

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

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,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물 등 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 한편, 외국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 등 등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·영업소 또는 업무담 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
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 하는 법원이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원고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